



TaxNewsFlash - Transfer Pricing

[Website](#) | [Archive](#) | [Contact](#)

삼정 KPMG 이전가격본부

6 February 2017

Transfer Pricing Newsletter

삼정 KPMG 이전가격본부(TP)는 글로벌 이전가격 이슈를 공유하고자 KPMG 에서 발간되는 TaxNewsFlash 및 Bloomberg 에서 발간되는 BNA Report 를 한국어로 요약하여 월 2회 제공합니다. 제목을 클릭하시면 원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KEY CONTACTS

강길원 전무이사(본부장)

(Tel: 02-2112-0907)

김상훈 상무이사

(Tel: 02-2112-7939)

백승목 상무이사

(Tel: 02-2112-0982)

India: Loss-making companies as comparables

인도의 Ahmedabad 법원(Ahmedabad Bench of Income-tax Appellate Tribunal)은 수행기능·부담위험이 상이하지 않는 한 제3자 독립기업의 지속적인 손실 기록만을 이유로 비교가능회사 선정에서 제외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으며, 비교가능성 차이 조정을 위하여 비교가능회사의 생산가동률 조정 등을 허용하였습니다.

배경

- 인도 과세당국 조사관은 비교대상회사의 장기간 연속적인 손실 기록을 근거로 두 회사를 비교대상회사에서 제외시켰습니다.
- 이에 납세자는 지속적인 손실 기록만을 이유로 비교대상회사에서 제외할 수 없으며, 높은 비교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보다 면밀한 기능·위험·자산 분석이 수행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인도 법원은 납세자의 의견을 받아들여 과세당국의 기능·위험·자산 분석이 고려하지 않고, 지속적인 손실 기록만을 사유로 비교가능회사에서 제외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감가상각비의 중대한 영향 고려

- 인도 과세당국 조사관은 납세자가 수익성지표(profit level

indicator)로 선정한 법인세, 감가상각비, 이자 차감 전 이익/매출액(이하, "PBDIT/Sales")을 Rule 108(1)(e)규정에서 명시하고 있지 않는 수익성지표라는 근거로 부인하고, 법인세 차감 전 이익/매출액 (이하, "PBIT/Sales")을 수익성지표로 선정하였습니다.

- 납세자는 분석대상연도에 중대한 고정자산을 추가로 매입하였으나, 이에 비례한 매출 달성이 어려우므로, 비교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감가상각비를 배제한 수익성지표가 선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법원은 중대한 고정자산의 추가 매입으로 인한 감가상각비 증가에 따라 납세자의 순이익이 감소하였음을 인정하고, 이에 상응하도록 수익성지표 선정시 충분 감가상각비용의 효과를 배제해야 한다는 판례를 인용하여 납세자가 채택한 수익성지표인 PBDIT/Sales를 인정하였습니다.

생산설비의 저조한 가동률에 대한 조정

- 납세자는 당해 연도 생산설비 가동률이 고정자산의 추가 매입으로 인해 35%로 저조하여 가동률에 대한 차이조정을 수행하였으나, 조사관은 소득세법(Income-tax Act, 1961) 규정에서 명시하고 있지 않은 비교가능성 차이 조정이라며 이를 부인하였습니다.
- 납세자는 생산설비의 저조한 가동률로 인해 이익률이 상당한 타격을 입었으므로, 이러한 특수한 영향에 대한 조정을 허용해 줄 것을 법원에 청하였으며, 법원은 납세자의 의견을 수용하고 이에 대한 조정을 허용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Back to top](#)

[Countries Delay First OECD Global Tax Reporting Deadline](#)

[\(Bloomberg BNA Tax Management TP Report Vol. 25, No. 16](#)

[p.958\)](#)

OECD에서 납세자의 실무적인 어려움을 고려하여 보고서 보고의무 및 제출기한을 완화하도록 촉구하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함에 따라, 일부 국가에서 2016 사업연도에 대한 국가별 보고서 (Country-by-Country Reporting, 이하 "CbCR") 작성주체(reporting entity) 신고기한 연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당초OECD에서 2016년 사업연도에 대한 CbCR 작성주체 신고기한을 2016년 12월 31일로 제시하였으나, OECD의 추가적인 권고를 받아들여 네덜란드, 벨기에, 체코, 핀란드, 포르투갈, 스웨덴, 스위스 등의 국가에서 신고기한을 2017년으로 연장하였습니다.

CbCR 작성주체 신고기한이 연장된 국가 및 신고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	CbCR 작성주체 신고기한
벨기에	2017.09.30
키프로스	2017.12.31
체코	2017.9.30
에스토니아	2017.06.30
핀란드	2017.5.31
일본	2017.03.31, 해외 소재 모회사의 경우, 2017.12.31
네덜란드	2017.09.01
폴란드	2017.10.31
포르투갈	2017.05.31
슬로바키아	2017.03.31
슬로베니아	2017.12.31
남아프리카 공화국	2017.12.31
스웨덴	2017.04.30
스위스	2017.12.31

참고로 한국의 경우 CbCR 제출기한은 12/31일이며, 금번 시행령(안) 제 21조의 2에서 CbCR 제출의무자 지정 서식 제출기한을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6/30)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Back to top](#)

[**Platform Publishes Guidance On Transfer Pricing Comparables**](#)

[**\(Bloomberg BNA Tax Management TP Report Vol. 25, No. 18
p.1053\)**](#)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 UN 및 OECD(이하 “4대 국제기구”)는 역외조세 회피 방지를 위한 조세 공동 표준(The Platform for Collaboration on Tax)을 작성하고 있는 가운데, 1월 24일에 개발 도상국가들의 만성적인 “비교가능거래”에 대한 가용 정보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침서 초안을 발표하였습니다.

동 지침서에서는 과세당국이 시장정보를 토대로 얻을 수 있는 비교가능거래가 부족한 경우에 다국적기업이 적용한 이전가격의 적정성을 검토할 수 있는 toolkit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동 toolkit는 국외특수관계자 간 거래를 정확하게 정의하고, 비교가능한 거래정보를 얻을 수 있는 잠재적으로 가용한 정보(data source)를 고려하여 이전가격 단계별 검토 템플릿을 제공하여, 비교가능거래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상황에서 존재하는 정보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과 정보가 전무한 상황에서 다국적기업이 적용한 이전가격을 검토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특히, 광물자원 채굴산업에서 국외특수관계자 간 적용되는 거래가격의 책정은 저소득 국가의 세수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바, 동 지침서는 가공 중간 형태로 판매되는 광물자원에 대한 가격정보의 격차를 해소하고자 특정 광물자원의 가공과정(구리, 금, 석탄 등 주요 광물의 공정 과정에 대한 상세한 사례연구 포함), 주요 무역대상 제품 및 산업 내 가격책정 관행 등 과세당국이 참고할 수 있는 체계적인 가격책정 과정을 제공합니다.

[Back to top](#)

Belgium: Transfer pricing documentation

벨기에는 2016년 7월 1일 Program Law 및 동년 10월 28일 관련 국왕시행령을 공표하며, OECD에서 권고한 이전가격보고서의 의무화 규정을 도입하였습니다. 본 규정은 2016 사업연도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통합기업보고서(Master File)

- **작성대상:** 직전 회계연도 기준으로 하기 요건을 1개 이상 충족하는 벨기에 법인이나 다국적기업의 벨기에 내 고정사업장이 작성대상입니다.

1. 영업소득 및 금융 소득금액 합계액(비경상 소득금액 제외) 5천만 EUR (약 620억)이상;
 2. 자산 총액 10억 EUR(약 1조 2400억원) 이상; 또는
 3. 연평균 정규(full-time)직원 100명 이상.
- **주요내용:** 벨기에 과세당국의 통합기업보고서 주석(commentary)에서 제시하는 통합기업보고서 상세 기재 내용은 OECD 가이드라인 대비 다소 요구하는 정보가 많은 편이나(예, 주요 무형자산거래 기여 금액 정보 기재 요구), 실무적으로는 벨기에 과세당국이 OECD 가이드라인 제시 수준의 통합기업보고서 작성률을 수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제출기한:** 보고대상 회계연도 종료 후, 12 개월 이내 제출하여야 합니다.

개별기업보고서(Local File)

- **작성대상:** 통합기업보고서 제출 대상과 동일하나, 개별기업보고서 제 2 장은 하기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만 작성대상입니다.
 1. 통합기업보고서 제출 대상 요건 충족; 및
 2. 1백만 EUR(12억) 이상의 국외특수관계자 간 거래가 있는 사업부 (Business Unit) 보유.
- **주요내용:** 벨기에 개별기업보고서는 대체적으로 OECD 가이드라인을 따르나, OECD 가이드라인보다 많은 정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개별기업보고서는 총 3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1. 1장(표 A): 벨기에 기업의 경영구조, 법적소유 구조, 국제 보고흐름, 사업부별 주요 활동, 경쟁업체들 목록, 고정사업장 정보, 당해 연도 주요 사업운영구조 변경 여부 등
 2. 2장(표 B): 각 사업부의 활동에 대한 상세한 설명, 과거 3년간 사업 부별 매출/매출총이익/영업이익, 정상가격 산출방법 및 거래규모, 국외특수관계인과의 재화거래, 용역거래, 금융거래 및 기타거래 목록, 정상가격산출방법 사전승인(APA) 승인서 등을 포함하는 국 외특수관계거래에 대한 설명 및 거래별로 적용된 정상가격 산출 방법
 3. 3 장(표 C): 기타 첨부 문서 (선택사항)

- **적용시점:** 1 장 및 3 장은 통합기업보고서와 같이 2016년 1월 1일 또는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2 장은 2017년 1월 1일 또는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됩니다.
- **제출기한:** 개별기업보고서 제출 기한은 법인세 신고 기한과 동일합니다.

국가별보고서(Country-by-Country Reporting, "CbCR")

- **작성대상:** 연결매출 7.5 억 유로 (약 1조원) 초과하는 다국적기업 최종모회사 또는 기업집단에 속한 기업으로서 국가별보고서 제출 대리인(Surrogate Parent Entity)이 작성대상입니다.

별기에 법인이 국가별보고서 제출 대리인이 아닌 경우에는 제출 주체가 기재된 CbCR Notification form 을 사업연도 말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2016년도 사업연도의 경우 2017년 9월 30일까지 제출기한이 연장되었습니다.

- **제출기한:** 보고대상 회계연도 종료 후, 12개월 이내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산세

CbCR Notification form 및 CbCR 제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기업과 고정 사업장은 1,250 EUR(약 155만원) 이상, EUR 25,000(약 3,11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Back to top](#)

[Privacy](#) | [Legal](#)

INTERNAL USE ONLY

27th Floor, Gangnam Finance Center, 152, Teheran-ro, Gangnam-gu, Seoul, Korea

© 2017 Samjong KPMG ERI Inc., the Korea member firm of the KPMG network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Cooperative ("KPMG International"), a Swiss entity. All rights reserved.

[kpmg.com/socialmedia](#)



[kpmg.com/app](#)

